

##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1월 21일  
중 소 기 업 청 장

### 1. 개정 이유

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인 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,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무관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가.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시·도지사까지 확대(제42조의2제1항)

- 1) 현행 협동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에게만 부여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지방조합 등의 주무관청인 시·도지사에게도 권한 부여 필요함

나.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부여(제42조의2제2항)

- 1)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제사업,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 및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사업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로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권한 부여 필요함
- 2) 중소기업중앙회는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등의 기관에게 공제사업 가입자 모집 기능을 위탁하고 있어 위탁기관에게도 수집 권한 부여 필요함

**다. 조합의 이사장, 사업조합의 이사장, 연합회의 회장에게 고유식별정보처리 권한 부여(제42조의2제3항)**

- 1) 협동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무 중 자금대부 및 공제사업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로 조합의 이사장, 사업조합의 이사장, 연합회의 회장에게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해 권한 부여 필요함

**3. 의견제출**

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동반성장지원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[www.smba.go.kr](http://www.smba.go.kr))의 “정보공개-법령정보-공고”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\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선사로 139(둔산동 920) 정부대전청사  
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
(전화 : 042-481-4394, Fax : 042-472-8960)